의안번호	2204538
의 뢰 인	이병진의원
회 답 일	2024. 11. 21.
추계번호	24B425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4,400만원, 2028년 2억 6,4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2억 4,100만원(연평균 2억 4,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의4 신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204	204	204	204	204	1,020	204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	40	40	60	40	40	221	44
	합계	244	244	264	244	244	1,241	24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의4 신설(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각각 둠(제1항)	의무·재량 규정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제2항) 1. 농수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함.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음(제4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5조의4 신설 (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법 시행규칙 제8조[1] 및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농산물의 수급 조절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2]에 따라 농산물의 수급 조절 등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위원회 구성일)** 2013. 4. 30

○ **(위원장)** 2명

○ **(위원 수)** 총 20명

- **(공무원)** 총 5명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및 유통소비정책관,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 **(민간위원)** 총 15명

  * (직 종) 생산자대표 등 15명

  (공공기관 1, 농협 1, 생산자단체 6, 소비자·유통업체 대표 4, 학계 3)

○ **(회의개최 횟수)** ('22년) 2회, ('23년) 3회, ('24년 9월) 3회

※ [참고자료]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현황 참고

❑ 한편, 해양수산부에는 별도의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

나. 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의4 신설)

❑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각각 두고, 속기나 녹음 등을 통해 회의록 작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회의 운영경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본 추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비용추계에 필요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가정

---

4.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2)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09호, 2023. 12. 29., 일부개정]

[표 2] 농산물 및 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등 가정

위원회	위원수 및 세부 내역		현행		개정안
농산물수급 조절위원회	민간위원 수		15명	➡	15명
	연간 회의개최횟수		4회		24회
	1인당 1회 회의참석 사례금		30만원[3]		30만원
	위원회 운영비		1회당 3백만원		1회당 3백만원
	사업경비	검증용역 (품목별 기준가격 설정 등)	매년 5백만원		매년 5백만원
		적정성평가 등 (위기단계 가이드라인 주기적 평가)	3년당 20백만원 ('25년 최초 실시 예정)		3년당 20백만원
		예비비	1회당 1.5백만원 (운영비의 50%)		1회당 1.5백만원 (운영비의 50%)
	속기록 작성비		—		1회당 1백만원
수산물수급 조절위원회	민간위원 수		미구성[2]	➡	11명
	연간 회의개최횟수				4회
	1인당 1회 회의참석 사례금				30만원
	위원회 운영비[1]				1회당 3백만원
	사업경비[1]	검증용역			매년 5백만원
		적정성평가 등			3년당 20백만원
		예비비			1회당 1.5백만원 (운영비의 50%)
	속기록 작성비[1]				1회당 1백만원

주: 1) 해양수산부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비, 사업경비, 속기록 작성비는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준용
2) 해양수산부는 현재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지 않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운영경비

○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경비는 개정안에 따른 운영경비에서 현행 운영예산(기준선)을 차감하여 추계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운영경비 = 개정안에 따른 운영경비 - 현행 운영예산(기준선)

○ 추계결과,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운영경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0억 2,000만원으로 추계됨

3)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218쪽)

[표 3]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내용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농산물 수급 조절 위원회 구성·운영	개정안	민간위원 회의참석 사례금	민간위원 수(A, 명)		15	15	15	15	15	—
			1인당 사례금 (B, 백만원/명)		0.3	0.3	0.3	0.3	0.3	—
			연간 회의개최횟수(C, 회)		24	24	24	24	24	—
			소계 (D=A×B×C, 백만원)		108	108	108	108	108	540
		위원회 운영비	속기록 작성비 (E=C×1백만원)		24	24	24	24	24	120
			회의 운영경비 (F=C×3백만원)		72	72	72	72	72	360
			사업경비 (백만원)	검증용역 (G1)	5	5	5	5	5	25
				적정성평가 (G2)	—	—	20	—	—	20
				예비비 등 (G3=F×50%)	36	36	36	36	36	180
				소계 (G=G1+G2+G3)	41	41	61	41	41	225
		소계(H=D+E+F+G)			245	245	265	245	245	1,245
	현행 (기준선)	민간위원 회의참석 사례금	민간위원 수(A, 명)		15	15	15	15	15	—
			1인당 사례금 (B, 백만원/명)		0.3	0.3	0.3	0.3	0.3	—
			연간 회의개최횟수(I, 회)		4	4	4	4	4	—
			소계 (J=A×B×I, 백만원)		18	18	18	18	18	90
		위원회 운영비	회의 운영경비 (K=I×3백만원)		12	12	12	12	12	60
			사업경비 (백만원)	검증용역 (L1)	5	5	5	5	5	25
				적정성평가 (L2)			20			20
				예비비 등 (L3=K×50%)	6	6	6	6	6	30
				소계 (L=L1+L2+L3)	11	11	31	11	11	75
		소계(M=J+K+L)			41	41	61	41	41	225
	추가재정소요(N=H−M)				204	204	204	204	204	1,02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 운영경비

○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경비는 개정안에 따른 가정을 참고하여 추계

○ 추계결과,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 운영경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억 2,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내용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수산물 수급 조절 위원회 구성·운영	민간위원 회의참석 사례금	민간위원 수(A, 명)		11	11	11	11	11	—
		1인당 사례금 (B, 백만원/명)		0.3	0.3	0.3	0.3	0.3	—
		연간 회의개최횟수(C, 회)		4	4	4	4	4	—
		소계 (D=A×B×C, 백만원)		13	13	13	13	13	66
	위원회 운영비	속기록 작성비 (E=C×1백만원)		4	4	4	4	4	20
		회의 운영경비 (F=C×3백만원)		12	12	12	12	12	60
		사업경비 (백만원)	검증용역 (G1)	5	5	5	5	5	25
			적정성평가 (G2)	—	—	20	—	—	20
			예비비 등 (G3=F×50%)	6	6	6	6	6	30
			소계 (G=G1+G2+G3)	11	11	31	11	11	75
	추가재정소요(H=D+E+F+G)			40	40	60	40	40	221

주: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비, 사업경비, 속기록 작성비는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준용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2억 4,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수급조절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204	204	204	204	204	1,020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	40	40	60	40	40	221
합계	244	244	264	244	244	1,24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Ⅳ. 부대의견

❑ 없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설치 현황

<table>
<tr><td colspan="2">① 명칭</td><td colspan="3">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td></tr>
<tr><td colspan="2" rowspan="2">② 소속 및 성격</td><td>소 속</td><td>주 관</td><td>성 격</td></tr>
<tr><td>농림축산식품부</td><td>농림축산식품부</td><td>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td></tr>
<tr><td colspan="2">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td><td colspan="3">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509호('23.12.29), 농안법 시행규칙('13.5.22)
정부입법(✓), 의원입법( )</td></tr>
<tr><td colspan="2">④ 위원회 구성일</td><td colspan="3">2013. 4. 30</td></tr>
<tr><td colspan="2">⑤ 존속기한 및 근거</td><td colspan="3">미설정</td></tr>
<tr><td colspan="2">⑥ 설치목적</td><td colspan="3">·농산물의 수급상황, 수급안정 대책 등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td></tr>
<tr><td colspan="2">⑦ 기 능</td><td colspan="3">·품목별 수급상황 조사·분석 및 판단,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개선, 대응방안 수립 및 추진 등에 대한 자문 등</td></tr>
<tr><td rowspan="5">⑧ 위 원
(총 20명)</td><td>위원장
(임명권자)</td><td colspan="3">김관수 교수(서울대학교) * 당연직( ), 위촉직(✓)
박수진 식량정책실장(농림축산식품부) * 당연직(✓), 위촉직( )</td></tr>
<tr><td>공무원
(총 5명)</td><td colspan="3">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및 유통소비정책관,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 통계청 사회통계국장</td></tr>
<tr><td>민간위원
(총 15명)</td><td colspan="3">(직 종) 생산자대표 등 15명(공공기관 1, 농협 1, 생산자단체 6, 소비자·유통업체 대표 4, 학계 3)</td></tr>
<tr><td>기타</td><td colspan="3">(별도구분) 여성 3명(15%), 비수도권 11명(55%)</td></tr>
<tr><td>직무윤리규정</td><td colspan="3">(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미대상</td></tr>
<tr><td rowspan="4">⑨ 회의
개최실적*
('24.1~
'24.12)</td><td>본회의</td><td colspan="3">출석 3회 * 서면 0회</td></tr>
<tr><td>개최장소</td><td colspan="3">수도권(서울) 3회, 비수도권 0회</td></tr>
<tr><td rowspan="2">분과회의</td><td colspan="3">분과위원회명 : 없음</td></tr>
<tr><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⑩ 예 산</td><td colspan="3">'24년 : 52백만원</td></tr>
</table>

❑ 활동내역서

1. '24년 9월말 기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3회(본회의 : 출석 3회, 서면 없음)

  * 분기별 개최(12월 예정)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2	2	2	0	0	0	0
2023년	3	3	3	0	0	0	0
2024년	3	3	3	0	0	0	0
총계	8	8	8	0	0	0	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49,000	49,000	-	-	14,000	12,000	-	2,000
2023년	54,000	54,000	-	-	42,000	21,000	-	21,000
2024년	52,000	52,000	-	-	22,000	22,000	-	-

* (`22) 사업경비 : 수급조절매뉴얼 보완용역, 용역 평가비 등(21,000천원)

* (`23)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 개정을 위한 용역비(74,500천원)는 별도 예산(유통개선 연구용역비)으로 집행

* (`24) 집행액은 현재 기준(9월)으로, 12월까지 집행액은 변동 가능